「고이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(태양광 발전시설) 설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(전력산업기반기금)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, 고아읍 마을 주민단체에서 주민이용시설(경로당, 마을회관)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요청
- 공공의 주민이용시설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여, 마을주민의 소득증대를 실현하고, 주민들의 복지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함.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*을 축조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.
 - * 영구시설물 : 공유지에 고착되어 이동할 수 없는 시설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 업 명 :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(태양광 발전시설) 설치

2) 기 간: 2025. 5월 ~ 2025. 12월

3) 설치대상지 : 고아읍 예강리 260-6번지 등 3개소

4) 주요시설 : 태양광 발전시설 3개소

나. 운영방법

1) 운영주체: 고아읍 마을 주민단체(예강2리, 봉한2리, 괴평2리)

2) 운영기간 : 2025년 ~ 2045년(20년)

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이후 10년(10년이내 2회 연장가능)

3) 운영범위: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

다. 발전시설 설치계획

1) 시설: PV(태양광 발전) 3개소, 각 10~20kW 설치환경에 따라 용량조정

2) 설치대상지

연번	구분	주소	담당부서	비고
1	예강2리 경로당	예강리 260-6	어르신복지과	신규설치
2	봉한2리 경로당	봉한리 911-238	어르신복지과	신규설치
3	괴평2리 마을회관	괴평리 208-1	새마을과	신규설치

라. 향후 추진계획

1) 2025. 3월 : 고아읍 주민이용시설 영구시설물(태양광 발전시설) 설치 동의

2) 2025. 4월 : 공유재산 사용허가

3) 2025. 5월 : 사업 착수

4) 2025. 12월 : 사업 완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제26조
- 2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3조
- 3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제9조
- 4)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제7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• 구미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에 따라 고아읍 주민 이용시설(고아읍 예강리 260-6번지 등 3개소)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해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주민의 요청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, 태양광 발전 수익의 창출을 통해 마을의 소득증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다만, 추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시, 태양광 발전시설 뿐만 아니라 주민의 필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, 설치 후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지·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